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

- The Combination of Accounting for Changing Prices and
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

박 한 순*
(Park, Han-Soon)

목 차

- I. 서 론
- II.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기초이론
- III. 각국의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
- IV. 결 론

I. 서 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영하는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각국의 물가변동 및 환율변동은 매우 중요한 기업환경요소가 되었다. 물가변동을 무시한 기존의 역사적원가회계에 의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유용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가변동이 반영된 재무제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영업활동하는 기업의 외화표재무제표를 모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한 화폐로 표시하기 위해서 모기업의 통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화로 환산하는 과정 역시 회계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그 기업이 연간물가상승률이 수십 퍼센트 이상인 매우 심한 물가변동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환산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이미 물가변동 및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IASC는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29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hyperinflation economy)에서의 재무보고에서 물가변동회계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조정보가 아닌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IAS 21에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해서도 IAS 29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ASB는 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89에서 물가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정보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준들은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를 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기준의 정립이 다소 미흡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물가변동회계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 4월에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토론회가 물가변동회계를 도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나라 외화환산회계기준에서 물가변동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물가변동회계 및 외화환산회계를 검토하고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각국의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과 관련된 회계기준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회계연구원, 2001, 토론회 제13호 "외화환산".

II.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기초이론

2.1 물가변동회계

물가변동회계(accounting for changing prices)란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 원가로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역사적원가회계(historical cost accounting)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로서, 다음과 같이 물가(또는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및 기업이익(business income)을 측정하기 위한 회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첫째 기업이익 측정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원가회계는 물가상승시에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역사적원가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가공이익을 계상하고 이를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자본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물가변동회계는 현재의 수익에 물가변동을 조정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가공이익의 계상을 방지하고 따라서 자본의 부실화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자산과 부채의 측정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원가회계는 재고자산, 유형자산같은 비화폐성항목을 취득시점의 역사적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현재의 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²⁾ 이에 비하여 물가변동회계는 비화폐성항목을 물가변동이 반영된 금액으로 재측정함으로써 현재시점의 가치인 현행가치(current value) 또는 이에 근접한 가치로 나타낸다.³⁾

물가변동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반물가수준변동(general price level change), 개별가격변동(specific price change) 및 상대가격변동(relative price change)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물가변동 요인과 관련하여 물가변동회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불변구매력회계와 현행원가회계로 구분된다.

역사적원가/불변구매력회계(historical cost/constant purchasing power accounting) (이하 “불변구매력회계”라 한다)란 일반물가수준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2)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구분은 SFAS 52, para.48과 SFAS 89, paras.41 and 96을 참조

3) 현행가치에는 현행투입가치(current entry value)인 현행원가, 현행산출가치(current exit value)인 순실현가능가액(net realizable value)과 처분가치(disposal value)가 있다(Wolk et al., 1984, p.354).

하기 위한 회계로서,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일반구매력을 갖는 화폐단위(이하 “불변구매력단위”라 한다)에 의한 역사적원가로 측정한다.⁴⁾ 일반구매력(general purchasing power)은 일반물가지수의 역수로 측정되며 일정량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화폐가치를 나타낸다. 일반물가지수(general price index)란 기준연도의 일반물가수준 대비 비교연도의 일반물가수준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⁵⁾ 특히, 비화폐성항목 및 이와 관련된 손익항목을 불변구매력단위로 재표시(restatement)하기 위해서 역사적원가 금액에 수정계수를 곱하는데, 수정계수(conversion factor)는 기준연도 일반물가지수 대비 당해연도 기말일반물가지수의 비율로 계산된다.⁶⁾ 기준연도는 당해 비화폐성항목의 취득·발생시점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현행가치로 재측정된 항목의 기준연도는 재측정시점이 된다.

현행원가회계(current cost accounting)란 개별가격(또는 절대가격)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로서,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현행가치로 재측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비화폐성자산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투입가치인 현행원가로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원가(current cost)란 과거에 실제로 취득한 자산과 동등한 자산을 현재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한다(SFAC 5, para.67).⁷⁾ 연중 평균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평균현행원가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되는 재화는 현행원가를 외화로 측정 후 현행

- 4) 불변구매력회계는 일반구매력회계(general purchasing power accounting), 불변화폐회계(constant dollar accounting) 또는 일반물가수준회계(general price level accounting)라고도 한다.
- 5) 일반물가지수로는 생산자간에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생산자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와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및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GNP 환가지수(Gross National Product Deflator) 등이 있다.
- 6) 재표시를 위한 수정계수의 분자에 IAS 29는 기말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SFAS 89는 평균 또는 기말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말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 7) 현행원가는 입수가능성, 신뢰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가격지수(specific price index)를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가격결정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100% 정확성(complete precision)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정확성(reasonable degree of accuracy) 정도가 요구된다. 지수방식에서는 외부기관이나 내부에서 작성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지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가격 결정방식에서는 현행거래가격(current invoice prices), 소비자가격(vendors' price lists), 현행원가를 고려한 표준제조원가(standard manufacturing costs) 등을 이용할 수 있다(SFAS 89, para.19). 그리고, 중고자산의 현행원가 측정방법은 SFAS 89, para.18을 참조.

환율로 환산한다. 다만 현행원가는 회수가능가액(recoverable amount)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시 회수가능한 순현금액의 현행가치로서 사용가치(value in use)나 순실현가능가액(net realizable value)으로 측정된다(SFAS 89, paras.16 and 29, IAS 15, para.12). 사용가치란 자산의 사용 및 내용연수말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IAS 36, para.5).

그밖에 상대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인 현행원가/불변구매력회계(current cost/constant purchasing power accounting)가 있는데, 이는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불변구매력단위에 의한 현행원가로 측정한다. 상대가격변동이란 개별가격변동중 일반물가수준변동부분을 제외한 가격변동부분을 말한다.

2.2 외화환산회계

외화환산회계(accounting for foreign currency translation)란 외화거래 또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회계로서,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분에 대한 환율변동의 영향에 관한 정보, 그리고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FAS 52, para.4). 여기에서 자국통화(domestic currency)란 모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를 말하고, 외화(foreign currency)란 자국통화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해외실체(foreign entity)란 해외에서 경영활동하는 종속회사(subsidiary), 비연결 관계회사(associate), 사업부(division), 지사(branch), 합작회사(joint venture)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모기업(parent company)은 지배회사, 본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⁸⁾

외화거래(foreign currency transaction)의 환산이란 외화매매거래, 외화자금거래 및 외화자산·부채를 자국통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산일의 외화거래 환산은 보유중인 외화자산·부채를 자국통화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표시재무제표(foreign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의 환산이란 본지점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8) SFAS 89와 IAS 21에서는 해외사업장(foreign operation)중에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것만을 해외실체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기업에 대한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사업장을 모두 해외실체로 부르기로 한다.

지분법(equity method)을 적용하거나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지사나 해외관계회사 또는 해외중속회사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⁹⁾

그런데, 외화거래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⁰⁾ 이와 관련하여 환산에 이용되는 환율을 대차대조표항목과 손익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항목의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에는 현행환율과 역사적환율이 있는데, 현행환율(current exchange rate)이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말하고 역사적환율(historical exchange rate)이란 당해 자산·부채 및 자본의 취득·발생시점의 환율을 말한다.¹¹⁾ 비화폐성항목이 특정 시점의 현행가치로 재측정되었다면 재측정시점의 환율을 역사적환율로 이용한다.¹²⁾ 손익항목의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에는 현행환율, 평균환율 또는 역사적환율이 있다. 현행환율은 손익인식시점의 환율을 의미하고, 평균환율(average exchange rate)은 손익항목이 회계연도중에 평균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며, 역사적환율은 관련 비화폐성항목의 취득·발생시점의 환율을 의미한다.¹³⁾ 매출, 매입 그리고 비화폐성항목과 관련된 손익항목을 제외한 기타의 영업비 등은 현행환율로 환산해야 하지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평균환율로 환산한다(SFAS 52, para.12). 비화폐성항목과 관련된 손익항목

9) 환산과 관련해서는 자산과 부채가 외화로 표시된 것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외화로 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환율은 직접표시법에 의한 현물환율(spot rate)을 의미한다.

10) 외화거래 및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에는 일반적으로 대고객전신환매매율과 매매기준율이 있다.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은 외국환은행과 고객간 외화거래에서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환으로 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외화거래를 환산하는데 이용된다. 전신환매매율에는 전신환매입률과 전신환매도율이 있다. 전신환매입률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서 외화를 살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외화자산 환산에 이용되고, 전신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팔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외화부채 환산에 이용된다. 매매기준율은 외화거래시 기준이 되는 환율로서,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환율로 환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매매기준율에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이 있는데, 기준환율은 미달러화와 원화간 매매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고, 재정환율은 미달러화 이외의 외화와 원화간 매매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11) IAS 21에서는 현행환율 대신 마감환율(closing rat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2) 이러한 환산방법은 IAS 21과 SFAS 8에 제시된 것으로서, 시제법(temporal method)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인 화폐성·비화폐성법과 구분하여 변형된 화폐성·비화폐성법이라고도 한다.

13) IAS 21에서는 손익인식시점의 환율을 거래환율(transaction rate)이라 한다. 평균환율은 매월말 환율의 단순평균환율 또는 매일 환율의 평균환율로 추정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비화폐성항목을 역사적환율로 환산하면 역사적환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항목을 현행환율로 환산하면 다른 손익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한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비화폐성법(monetary-nonmonetary method)에 따라 화폐성자산·부채는 현행환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부채는 역사적환율로 환산한다.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방법으로는 화폐성·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current rate method)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IAS 21과 SFAS 52에 의하면 해외실체가 모기업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지에 따라 환산방법이 결정된다.¹⁴⁾ 해외실체가 자국내 모기업의 일부분이면 외화거래와 마찬가지로 화폐성·비화폐성법으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환산하고, 해외실체가 자국내 모기업과 비교적 독립적이면 현행환율법으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환산한다.

2.3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는데, 양자의 결합은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환산하는데 매우 필요하다.¹⁵⁾

우선 불변구매력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에 있어서, 재표시와 환산의 순서에 따라 환산후재표시법 또는 재표시후환산법이 있다.

환산후재표시법(translate-rewrite method)은 해외실체의 명목화폐단위로 표시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한 후 자국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불변구매력단위로 재표시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재표시후환산법(rewrite-translate method)은 해외실체의 명목화폐단위로 표시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해외소재국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불변구매력단위로 재표시한 후 자국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Zenoff and Zwick(1969)는 재표시후환산법을, Lorensen and Rosenfield(1974)는 환산후재표시법을 지지하고 있다. 해외실체가 모기업의 일부분이어서 주로 자국 통화로 영업활동한다면,

14) 모기업의 일부분인 해외실체와의 구분을 위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해외실체의 특징은 IAS 21, para.26을 참조하고, 양자간 구분의 변경과 관련된 회계원칙은 IAS 21, para.40을 참조.

15) 이하 외화환산회계란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을 위한 회계를 의미한다.

환산후재표시법을 적용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으로 환산한 후 자국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실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어서 주로 해외소재국 통화로 영업활동한다면, 재표시후환산법을 적용하여 해외소재국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재표시한 후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

그런데, 상대적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의하면 환율의 백분율 변화와 일반물가수준 백분율변화(이하 “물가변동률”이라 한다)의 양국간 차이는 일치하게 된다.¹⁷⁾ Hall(1983)은 43개 국가에 대하여 1961년부터 1980년까지의 환율과 물가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PPP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상대적 물가수준 변동에 대한 환율변동의 회귀분석에서, 분석기간동안 연간 20% 이상이라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8개 국가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35개 국가와 달리 상대적 PPP가 성립함을 보였다. 즉, 절편은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고, 기울기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0과 다르면서 그 값이 1에 가까움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자가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우며 특히 단기적으로는 양자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이 1990년대 이후에도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과 미국간 물가변동률 차이와 환율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율변동률은 양국간 물가변동률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재표시후환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외소재국 물가변동률과 미국 물가변동률간 차이가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형조정(parity adjustment)이라고 하여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 PPP가 성립하여 국내 물가변동률과 해외소재국 물가변동률간 차이와 환율변동률이 일치한다면, 평형조정과 환산조정이 상쇄되어 환율변동이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0이 된다(Hall, 1983, pp.299-300). 결국, 평형조정과 환산조정 합계는 상대적 PPP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환율변동이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PPP가 성립하여 환율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물가상승률과 일치한다고 가정할 때, 순자산이 양의 값이면 환산조정은 양의 값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중윤(1995) pp.244-245 참조

17) 일반적으로 일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물가변동률을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이라고 하기도 한다.

을 갖고 평형조정은 음의 값을 가져 양자의 합은 0이 된다. 환율변동률이 물가변동률 차이보다 크다면 환산조정이 평형조정보다 큰 값을 갖고, 반대로 환율변동률이 물가변동률 차이보다 작다면 환산조정이 평형조정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현행원가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에서는 해외실체가 모기업의 일부분이면 환산 후 재측정방식을 적용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으로 환산한 후 자국의 현행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측정한다.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면 재측정후 환산방식을 적용하여 현행원가로 재측정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한다. Choi(1975)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불변구매력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보다는 현행원가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을 주장하면서 현행원가로 재측정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할 것을 제시하였다.

불변구매력회계, 현행원가회계 및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에서도 해외실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면, 재표시후환산법을 적용하여 비화폐성항목을 현행원가로 재측정하고 자본을 해외소재국 일반물가지수로 재표시한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하여 현행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각국의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

3.1 미국회계기준

1986년에 공표된 SFAS 89는 물가변동의 효과에 관한 보조정보의 공시를 권고한 미국의 현행 물가변동회계기준으로서, 외화환산시 물가조정 방법에 관하여 간략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1981년에 공표된 SFAS 52는 미국의 현행 외화환산회계기준으로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highly inflationary economy)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는 해외실체가 모기업의 일부분일 때 환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 화폐성·비화폐성법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란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대략 100% 이상인 것을 말한다(SFAS 52, para.11).

SFAS 89에 의하면, 현행원가로 재측정된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환산하고 불변구매력 단위로 재표시하는데 있어서, 해외실체의 영업활동이 중요하지 않거나 보고통화인 미국통화를 기능통화로 이용하면 환산후재표시법을 적용하여 환산된 재무제표를 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로 재표시하고, 영업활동이 중요한 해외실체가 미국통화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이용하면 환산후재표시법(CPI-U 사용) 또는 재표시후환산법(기능통화의 일반물가지수 사용)을 적용한다.¹⁸⁾ 재표시후환산법을 이용할 경우, 환산후재표시법에 의한 기말불변화폐 달러자본과 재표시후환산법에 의한 기말불변화폐 달러자본간 차이를 평형조정으로서 자본에 직접 가감하여 재표시후환산법에 의한 기말불변화폐 달러자본을 환산후재표시법에 의한 기말불변화폐 달러자본에 일치시킨다.

두 방법은 화폐성항목에 대한 구매력손익과 비화폐성항목에 대한 실질보유손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하다.¹⁹⁾ 우선 환산후재표시법에서는 외화화폐성항목과 현행원가로 표시된 외화비화폐성항목을 현행환율로 환산한 다음 CPI-U를 이용하여 불변화폐 달러금액으로 재표시하여 구매력손익과 실질보유손익을 산출한다. 이에 비하여 재표시후환산법에서는 외화화폐성항목과 현행원가로 표시된 외화비화폐성항목을 기능통화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불변화폐로 재표시하여 구매력손익과 실질보유손익을 산출한 다음 이를 현행환율로 환산한다.

3.2 국제회계기준

IASC는 물가변동회계기준인 IAS 15에서 물가변동회계를 보조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불변구매력회계, 현행원가회계 및 양자의 결합회계를 모두 허용하였다. IAS 29에서는

- 18)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로서, 해외실체 입장에서 보고통화란 모기업 재무제표와 결합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될 통화인 모기업통화(parent's currency)를 말한다.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란 특정 실체가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SFAS 52, para.39).
- 19) 화폐성항목은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화폐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화폐성항목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물가수준변동으로 인하여 구매력손익(purchasing power gain or loss)이 발생한다. 비화폐성항목을 보유하게 되면 개별가격변동으로부터 보유손익(holding gain or loss)이 발생한다. 실질(real)보유손익이란 일반물가수준변동의 효과가 제거된 불변구매력단위로 측정된 보유손익을 말한다.

기업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으면 결산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표시된 재무제표를 보조 정보가 아닌 주요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IAS 21에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된 독립된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하여 IAS 29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결산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표시한 후 마감환율을 이용하여 보고통화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된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하여 재표시후환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IAS 29에 규정된 초인플레이션경제란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약 100% 이상인 경제를 말한다.²⁰⁾

3.3 우리나라 회계기준

우리나라의 물가변동과 관련된 현행 회계기준은 현행원가로의 재측정이 일부 항목에만 허용되고 있는 역사적원가회계에 입각한 기준으로서, 재무제표를 불변화폐단위로 재표시하기 위한 불변구매력회계기준이나 현행원가로 재측정하기 위한 현행원가회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일부 비화폐성항목을 현행가치로 재측정하기는 하지만 현행원가기준 기업이익을 측정하거나 구매력손익을 측정하는 등의 물가변동회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행 외화환산회계기준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상황과 관련된 외화환산회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 4월에 마련된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토론서 역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하여 물가변동회계를 도입하는 대신 SFAS 52와 마찬가지로 해외실체를 모기업 일부로 간주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개정방향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외화환산회계에서 물가변동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보다 자세한 초인플레이션경제의 특징에 대해서는 IAS 29, para.3을 참조.

첫째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환경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는데 있어서 SFAS 52는 단지 안정적인 통화인 보고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SFAS 89 역시 의무적인 이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물가상승을 무시하고 환산된 대차대조표 수치는 현행 측정단위를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은 물가변동에 의한 손익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환경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에 대해서는 IAS 29 규정처럼 물가변동을 조정하여 환산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은 미국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처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00%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해외실체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에 물가변동회계를 반영할 때에는, SFAS 89 규정처럼 대표시후환산법과 환산후대표시법을 모두 허용하기보다는 IAS 29 규정처럼 대표시후환산법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해외소재국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대표시하거나 해외소재국 현행원가로 재측정한 다음 현행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 영업활동하는 해외실체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에 특히 필요한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선호되는 결합형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외화환산회계에서 물가변동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변구매력회계와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에서 해외실체가 모기업의 일부분이면 환산후대표시법을 적용하고 해외실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면 대표시후환산법을 적용한다. 불변구매력회계, 현행원가회계 및 외화환산회계의 결합에서는 해외실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면, 대표시후환산법을 적용하여 현행원가로 재측정하고 해외소

재국 일반물가지수로 재표시한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하여 현행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해외실체가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 영업활동한다면 물가변동회계와 외화환산회계를 결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최종윤. 1995. 외화표시재무제표 환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제3권): 241-260.
- 한국회계연구원. 2001. 토론서 제13호 "외화환산".
- FASB. 198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2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 FASB. 1986.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89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 IASC. 1989.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IASC. 199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15 "Information Reflecting the Effects of Changing Prices"*.
- IASC. 199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 IASC. 199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 Choi, F. D. S. 1975. Price-level Adjustment and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re They Compatib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10, 121-143.
- Griffin C., T. Williams, J. Boatsman and D. Vickrey. 1991. *Advanced Accounting*. Irwin.
- Hall, T. W. 1983. Inflation and Rates of Exchange: Support for SFAS No. 52.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19, 299-313.
- Kieso, D. E. and J. J. Weygandt. 1995. *Intermediate Accounting*. John Wiley & Sons.
- Krugman, P. R. and M. Obstfeld. 2000. *International Economics*. 5th edition. Addison-Wesley.

- Lorensen, L. and P. Rosenfield. 1974. Management Information and foreign Inflation, *Journal of Accountancy*, 98-102.
- Nance, J. R. and R. A. Roemmich. 1983.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n Evalu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18, 29-48.
- Wolk, H., J. Francis and M. Tearney. 1984. *Accounting Theory*. Wadsworth.
- Zenoff, D. B. and J. Zwick. 1969.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